

**고령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
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(배효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2.

발 의 자 : 성원환·김명국·이달호·

김선욱·배효임·배철현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 전부개정)」 전부개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고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항의 변경

3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고령군의회 조례 제 호

고령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2조”를 “제5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제113조부터 제116조”를 “법 제126조부터 제13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 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법 제113조부터 제116조</u>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 <u>51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 제126조부터 제131조</u>----- ----- 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